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40
------	------

발의일자 : 2020. 11. 17.

발 의 자 : 박찬길 의원

찬 성 자 :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사회공익을 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추방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등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금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익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란 서울특별시금천구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鄉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5. 30.]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5. 30., 2020. 3. 31.>

1. 정관의 변경
2. 삭제 <2020. 3. 31.>
3. 예산·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전문개정 2010. 7. 23.]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5. 30.>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3. 31.>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1. 5. 30.]

제13조(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 5. 30.>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1. 5. 30.]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7조 삭제 <2000. 1. 28.>

제18조 삭제 <2000. 1. 28.>

부칙 <제17167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0.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7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